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Q&A



보건복지부

목 차

- Q1. 자립수당이 무엇인가요? 1
- Q2. 자립수당의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 1
- Q3. 자립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1
- Q4.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1
- Q5. 자립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
- Q6.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3
- Q7. 자립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 Q8. 어떤 경우에 자립수당 수급권 상실·정지되나요? ... 3
- Q9. 군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 Q10.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4
- Q11.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4
- Q12.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5
- Q13.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립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5
- Q14. 자립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5
- Q15.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되나요? 5

Q1. 자립수당이 무엇인가요?

A1.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 자립수당의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

A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Q3. 자립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2년 1개월 인정

Q4.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4. 자립수당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자립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5.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시설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19.3.18. 이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19.3.18. 이후 상시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Q6.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자립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7.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됩니다.

Q8. 어떤 경우에 자립수당 수급권 상실·정지되나요?

A8. 자립수당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시설 재입소 시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수급권이 정지됩니다.

*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 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Q9.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9.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Q10.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10.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11.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1. 자립수당은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적금, 청약통장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통장 불가)
다만, **보호종료아동이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 자립수당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이 경우 **최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Q12.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A12.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13.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립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3. 허위 신고 또는 수급권 상실·정지된 보호종료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행정 착오·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자립수당이 환수 처리됩니다.

Q14. 자립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4. 자립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15. 보호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되나요?

A15. 자립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하세요!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②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신청지역

-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 1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24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내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 2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3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4월 30일**
 -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2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참고 2

자립수당 리플릿



Q&A

자립수당

① 언제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①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서 12월까지 지급합니다. 본 사업 시행 시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됩니다.

②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②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③ 보호종료 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③ 보호종료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수행기관 명단은 3월 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

④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무엇인가요?

④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연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가능한 급여·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득 지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 만 30세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 만 24세 이하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기존)40만원+추가30% → (변경)50만원+추가30%

주거 지원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실시 (240호)
 - ▷ 원룸형 주거지원(인대로 무료, 관리비만 부담)
 - ▷ 자립 정보,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 20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http://jarip.or.kr>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모를 받은 아동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② 우편 또는 팩스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 단,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등

Q&A, 신청서식, 수행기관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jarip.or.kr>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 다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지원방법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40호 지원 : 6월 입주
 - ▷ 보증금, 임대료 무료
 - ▷ 관리비, 예치금(100만원) 본인 부담
-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 구비
- 자립정보,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 7월 이후
 - ▷ 매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상당 자립 경비 지원

신청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신청서류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자립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대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②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자립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서류

- 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단, 입류병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사전신청

-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

※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 참조

